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

[소관 : 상표심사정책과]

제	정	2009. 3.25	특허청고시 제2009- 6호
개	정	2009. 8.24	특허청고시 제2009-19호
개	정	2013.10.31	특허청고시 제2013-25호
개	정	2020. 4.00	특허청고시 제2020-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3 규정과 관련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충실한 이행과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와 관련된 디자인 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리협약"이라 함은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2.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라 함은 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을 말한다.
3. "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4.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라 함은 주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를 말한다.
5. "대한민국 공익표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국기, 문장, 기타의 국가기장 및 우리나라 정부 및 정부의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 공공의 기호와 인장을 말한다.
6.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 문장, 기타의 국가기장,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 공공의 기호와 인

장,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 문장,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을 말한다.

7. "공익표장 자료집"이라 함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국기·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장·표장 및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발간한 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파리협약 제6조의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1호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보호 요청

제4조(대한민국 공익표장의 수집) ①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부처에 그 공익표장의 통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국제사무국에 대한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통지)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집된 대한민국 공익표장이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해 확인된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매년 2월과 8월의 말일까지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다자기구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다자기구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의뢰받은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매년 2월과 8월의 말일까지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 표장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에 그 내용과 이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한민국 공익표장의 통지결과 확인) ①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매년 3월과 9월의 마지막 업무일에 국제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내용 중에서 제5조에 의한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통지 내용이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모든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에서 보호되며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맹국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그 동맹국내에서는 보호되지 않음을 해당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경우 이를 해당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해당부처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증거를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부처의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이의신청의 성립성 여부를 확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과 해당하는 동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성립성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해당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국내에서의 보호

제8조(국제사무국으로부터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수령) ①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매년 3월과 9월의 마지막 업무일에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로부터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전자적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 전자적으로 공개된 날은 국제사무국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대한민국 통지수령일로 간주된다.

③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 공중에 대한 공개)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8조에 의해 수령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되도록 즉시 정보시스템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해 의뢰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정확히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과장에게 그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와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제외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또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잘못 등록된 경우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 및 대한민국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국기의 채택·사용일 또는 대한민국에서 당해 공익표장의 채택·사용일로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잘못 등록된 경우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⑥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해당 동맹국에서 공개된 날로부터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그 이유와 증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해당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표장 또는 명칭이 아닌 경우
2.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이미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3.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다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의 표장 또는 명칭으로 기 통지된 경우
4.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자유사용 상태에 있다는 것

제10조(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9조제7항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성립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의 판단 결과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한 경우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처리와 관리는 상표심사정책과장이 수행하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감독한다.

제11조(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분류)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도형상표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12조(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전자자료의 심사참증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수령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전자자료를 정보관리과장에게 이송하여 상표디자인 심사참증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과장은 제1항에 의해 의뢰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심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 심사참증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재산조사과에 통지)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내용을 산업재산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 통지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처리) ① 특허청장(상표심사정책과장)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기 통지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도 제9조에서 정하는 형식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과장에게 그 자료를 이송하여 공개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과장은 제2항에 의해 의뢰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공익표장 자료집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행일에 제9조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 등 변화를 검

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9-6호,2009.3.25>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특허권무상실시요령 등 개정고시) <제2009-19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5호, 2013.11.1.>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0-11호, 2020.4.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